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유보신고제 반력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IoT 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전화번호 불법변작 관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 삭제(안 제2조제2항)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 서비스는 ‘18.12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

나. 공익성심사 규제 명확성 제고(안 제13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익성심사를 받게 함

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안 제30조의5)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양)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

라.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기준 등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인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를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전화 비대면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안 제37조의6제2항)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바. 전화번호 불법변작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54조의2)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관련, 방지조치 이행 여부 검사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안 제24조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47호, 2020.6.9.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법률용어도 모법과 동일하게 변경

아.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안 별표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 수준으로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과 합병

제24조의 제목 “(사업의 휴지 등의 승인 신청)”을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지(休止) 또는 폐지”를 “휴업(休業) 또는 폐업”으로,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휴지 또는 폐지하려”를 각각 “휴업 또는 폐업하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지하는”을 “폐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각각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폐지하려”를 “휴업·폐업하려”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를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 또는 폐지를”을 “휴업 또는 폐업을”로, “휴지·폐지신고서”를 “휴업·폐업신고서”로,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사실”로,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폐지”를 각각 “사업폐업”으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

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7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이용자로부터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채널 등의 확보
2.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실 및 그 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3.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제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4.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수단과 인증수단 제공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지”를 “폐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를 “(부가통신

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휴지·폐지를”을 “휴업·폐업을”로, “휴지·폐지 신고서”를 “휴업·폐업 신고서”로, “휴지·폐지의”를 “휴업·폐업의”로,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인가)”를 “(이용약관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 제4항”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을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력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가”를 “변경신고”로 한다.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반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에 신고된 유사한 요금제에 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이용 및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서비스·기기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라. 그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 등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 설비 등의 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 그밖에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형식, 반려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4제4항제3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한

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호 중 “여부 확인에 관한”을 “여부를 확인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사에 관한”을 “검사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및 제7호의4 중 “휴지·폐지신고”를 각각 “휴업·폐업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폐지명령”을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사업폐지”를 “사업폐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 게 위임한다.

1.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법 제10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0호 중 “휴지·폐지”를 각각 “휴업·폐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7) 중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은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의 등록요건을 따른다.

별표 2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폐지”를 “사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처분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사업폐지”를 “사업폐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휴지”를 “휴업”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처분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사업폐지”를 “사업폐업”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처분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중 “사업폐지”를 “사업폐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제1호,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1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의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스”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한다.

②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라 한다)”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의 심사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로, 같은 호 나목 중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로,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로, “인가 서비스로서”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가”로, “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으로,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를 “법 제28조제4항 대상 사업자의”로,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을 “해당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인가서비스”를 각각 “해당 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2항가목 중 “인가서비스”를 “해당 서비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생략)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3.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휴대인터넷 서비스	<삭 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생략)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과 합병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의 휴지 등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u>휴지(休止)</u> 또는 <u>폐지</u> 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u>휴지 또는 폐지</u>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 ----- <u>휴업(休業)</u> 또는 <u>폐업</u> ----- -- <u>휴업 또는 폐업</u> ----- ----- -----.
1. <u>휴지 또는 폐지</u> 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1. <u>휴업 또는 폐업</u> 하러----- -----
2. <u>휴지 또는 폐지</u> 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2. <u>휴업 또는 폐업</u> 하러----- -----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u>폐지</u>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u>폐업</u> 하는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휴지 또는 폐지</u>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5. <u>휴업 또는 폐업</u> ----- -----
6. <u>휴지 또는 폐지</u> 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6. <u>휴업 또는 폐업</u> ----- ----- --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 <u>휴지·폐지</u> 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	② ----- -- <u>휴업·폐업</u> 하러----- -----

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24조의2(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 ① (생략)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② -----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 휴업 또는 폐업
를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	을 -----
업 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	-- 휴업·폐업신고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	-----
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 사실	-----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
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① (생략)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	② -----
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폐지	----- 사업폐업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	-----
표 2와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③ -----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폐	----- 사업폐
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	업 -----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
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	-----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
다.	--.
<신 설>	제30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서
	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
	치)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
	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
	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
	자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정적
	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
	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
	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

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7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이용자로부터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채널 등의 확보
2.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실 및 그 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3.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제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4.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수단과 인증수단 제공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 3. (생 략)

4. ~ 6. 삭 제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
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
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
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폐지
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또는 변경신고) ① -----

--.

1. ~ 3. (현행과 같음)

7. -----

폐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
업 등의 신고) ① -----
----- 휴업
· 폐업을 -----
----- 휴업·폐업 신고서-
----- 휴업·폐업
의 -----
----- 휴업 또는 폐업

한다.

② (생 략)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인
가)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비스로 한다.

1. 제38조에 따라 확정(劃定)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
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
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간통신서비스

2. (생 략)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4항 -----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
함한다)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는 -----
-----.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변경신고-----

장관에게 그 변경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

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반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에 신고된 유사한 요금제에 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이용 및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서비스·기기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책

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
한 경우
 라. 그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 등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
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
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기 위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
 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해 필요한 전기통신서비
스, 설비 등의 요소를 정당
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전기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
우
 다. 그밖에 공정한 경쟁을 현
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형식, 반려 세부 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
 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경우를 말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u>휴지 또는 폐지</u> 등이 없었던 경우	3. ----- ----- <u>휴업 또는 폐업</u>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6(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생 략)	제37조의6(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 ----- ----- ----- -----.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u>여부 확인</u> 에 관한 업무	1. ----- ----- <u>여부를 확인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원하는</u> ----- -----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u>검사에 관한</u> 업무	2. ----- ----- <u>검사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원하는</u> ----- --
제6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u>휴지·폐지신고</u> 의 접수·처리	4. ----- ----- <u>휴업·폐업신고</u> -----
5. ~ 7의3. (생 략)	5. ~ 7의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연락처	(044) 202 - 6625